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1023
----------	--------

제출년월일 : 2026. 3. 27.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 전국적으로 관행적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언론보도 등에 따른 방지 대책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이 마련,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심사위원회 구성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 위촉 의무화(안 제4조제2항)
-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 허용하되 엄격히 검토하여 의장이 허가(안 제11조제2항)
- 의장의 허가검토서 누리집 공개 절차 신설(안 제11조제3항)
- 징계 또는 출장경비 환수 처분을 받은 의원에게 대해 2년 이내 출장 제한 의무화(안 제11조제4항)
- 위법·부당한 출장 판단 시 감사원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조사 의뢰 의무화(안 제12조제5항)
- 의원의 위법·부당한 명령에 대한 직원 거부권 보장 및 이에 따른 직원 인사·평가 등에 불이익을 금지하고,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 금지(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3. 개정조례안 : 붙임 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5. 현행조례 : 붙임 3
6. 예산수반 사항 : 해당없음
※ 비용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생략
7. 참고자료 : 붙임 4
- 관련 공문
 -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붙임 1】 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제7항 중 “허가권자” 를 “의장” 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개의회고” 를 “개회하고” 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1인” 을 “1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를 “출장계획서” 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 이라 한다)” 을 “대표의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계획이 변경된” 을 “변경된” 으로 하며,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 을 “출장계획서를 5일간 안산시의회 누리집” 으로 하고, “개의회여” 를 “개회하여” 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5항” 을 “제6항” 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2항” 을 “제5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안산시의회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안산시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 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 의정과와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 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 제한 사유가 있는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4.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가 많은 경우 공무국외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생략)</p> <p>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u>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u></p> <p>③ ~ ⑥ (생략)</p> <p>⑦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 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u>허가권자</u>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p> <p>⑧ (생략)</p> <p>제9조(회의) ①(생략)</p> <p>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의하고</u>,</p>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하여야 한다.</u></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u>의장</u>----- ----- -----</p> <p>⑧ (현행과 같음)</p> <p>제9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 ----- ----- <u>개회하고</u></p>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공무국
외출장 담당팀장이 된다.

④ 간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
위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
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의 대표
의원(이하 “대표의원” 이라 한다)
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
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
항에 따른다.

③ -----

----- 1명 -----

④ -----
----- 출장계획서 -----

⑤ -----
----- 대표
의원 -----

⑥ -----
-----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안산시의회 누리집 -----

----- 개회하여 -----

⑦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⑧ (생략)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2. (생략)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 5. (생략)

6.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신설>

⑦ -----

-- 제6항 -----

-----.

⑧ (현행과 같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

----- <단서 삭제>

1.·2. (현행과 같음)

<삭제>

4. ~ 5. (현행과 같음)

6. 제5항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공무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생 략)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첨부)를 안산시의회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허가검토서를 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위원회는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와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생략)

<신설>

<신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제출받은 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안산시의회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안산시의회 누리집,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 출장의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 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지방의정과의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 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2.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출장 제한 사유가 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3.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원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원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원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원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아니오' 가 많은 경우 공무원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 '아니오' 가 많은 경우 공무원출장이 부적절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심사			

안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안산시의회